

제 1059 호
1985. 1.28

편집장 공백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 모 원
→ 공 보 관 조 남 호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1989 호 : 서울특별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
개정조례 4
- 제 1990 호 : 서울특별시새중문화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 4

◎ 훈 령

- 제 624 호 : 서울특별시경찰서정보 1 과 및 정보 2 과사무분장규정
개정규정 4
- 제 625 호 : 서울특별시경찰서특수지역등의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 5

< 이 면 제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626 호 : 서울특별시경찰국정보 1 과 정보 2 과 및 의사과 사무분장규정 개정규정	9
--	---

◎ 고 시

제 63 호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지적승인	9
제 6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0
제 65 호 : 급수공사정액공사비 및 실시지역	10
제 66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1
제 67 호 : '85 가축점진사업 실시	12
제 68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지적승인 및 (학교) 변경결정	12
제 69 호 : 도시계획사업 (시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변경허가 (제 2 차)	13
제 7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터널구간) 실시계획인가	14
제 71 호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17
제 72 호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17
제 73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 정정고시	18
제 74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8
제 7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9
제 76 호 : 도시계획시설 (운하, 도로) 실효고시	20
제 77 호 : 관악산자연공원조성계획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21
제 78 호 :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 (학교, 도로) 지적승인 및 변경 지적승인	21
제 79 호 : 신문로구역제 2 지구재개발사업제 3 개발자 지정고시	23
제 80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23
제 8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일부정정)	24
제 82 호 : 하천토지 점용허가고시	25
제 83 호 : 신문로구역제 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	25
제 8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26
제 85 호 : 은명구불광동 105-280 간 도로개설공사 추가실시계획인가	31
제 86 호 :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33
제 87 호 :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 서울대공원운동시설조성공사	33

◎ 공 고

제 81 호 : KS 표시정지처분 해제공고	34
-------------------------------	----

제 82 호 : KS 표시정지처분 공고	35
제 84 호 : 도로공사계획공고	35
제 85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를 위한 공람공고	38
제 86 호 : 건설업 (전문공사업) 영업정지처분	39
제 8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39
제 88 호 : 도로개설 및 하수도실시계획인가	41
제 8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41
제 90 호 : 도로공사 계획공고	44
제 91 호 : 건설업 (전문공사업) 영업정지처분	45
제 92 호 : 서울특별시직제개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 공고	45
제 94 호 : 은평구대조동81-1~81-105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공람공고	47
제 95 호 : 은평구신사동 268 의9~262 의 12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 공람공고	49
제 96 호 : 청산금납입고지서 공시송달공고	52

◎ 구청공고

동대문구제 6 호 : 상설시장개설허가공고	53
------------------------------	----

◎ 예 규

제 468 호 : 서울특별시립 동부여자기술원운영규칙 폐지예규	53
제 469 호 : 서울특별시 급수공사사무취급 요령중 개정요령	53

◎ 사 련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 2.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구본석

서울특별시조례제 1989 호

서울특별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0,000원"을 "3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 2. 5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990 호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무용단" 다음에 "오페라단"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경찰서정보1과 및 정보2과 사무분장규정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5. 2. 5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훈령제 624 호

서울특별시경찰서정보1과및정보2과사무분장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경찰서정보1과 및 정보2과 사무분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경찰서정보과 및 대공과 사무분장규정

(내용생략)

서울특별시경찰서 특수지역등의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5.2.5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훈령제 625 호

서울특별시경찰서특수지역등의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경찰서 특수지역등의 관할 구역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경찰서 관할구역중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관할한계를 확정하여 관할구역 경계선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처리의 일원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범 위) 이 규정에서 정한 경찰서 관할 구역중 도로, 교량, 하천, 터널, 철도, 지하상가(지하도 포함) 및 기타 특수지역은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관할구역의 지정) 제 2 조에 정한 특수지역의 관할구역은 각각 별표 (1-7) 와 같이 한다.

제 4 조 (업무처리 책임) ① 특수지역의 관할구역 경계선상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고(교통사고, 변사사고, 익사 및 기타 범죄신고)에 대하여는 먼저 발견 또는 신고를

수한 경찰서에서 즉시 초동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에 통보 인계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경찰서는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책임인솔하에 긴급에 출동하여 사건을 인수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관할구역이 아닐을 이유로 제 1, 2 항에 규정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늦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관할구역에 대한 기준) 특수지역의 관할구역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하천교량은 북측 또는 동측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관할로 한다.
2. 하천의 수면과 지면의 경계를 이루는 선(전천은 제방하단)으로 한다.
3.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경우에는 차도의 경계선, 기타도로는 건축선으로 한다.
4. 교량은 최초의 이동선으로 한다.
5. 공작물은 당해 공작물이 위치한 부지의 경계선
6. 도로의 지상 구조물은 도로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육교는 도로의 상각하수도를 연결하는 수직선, 고가도로는 입·출구

까지 전체 관할을 원칙으로 한다.	칙으로 한다.
7. 지하도, 지하상가는 관할서에서 전체관할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8. 터널은 시내중심(서울시청)측 입구 관할서에서 전체관할을 원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상의관할한계

순 위	구 간	관 할 서
1	청계천 차도 및 고가도로 (동아일보사 어귀에서 청계천과 중랑천 합류 지점까지)	청계천 동·북측 관할 경찰서
2	삼청동 산책도로 (성균관대학 후문 진입도로)	종로경찰서
3	남대문로(조흥은행 본점앞 횡단보도에서 신세계 백화점 경유 대연각 정문앞)	남대문경찰서
4	만리동에서 아현동까지의 차도	"
5	회현 고가도로	"
6	서소문 고가도로	서대문경찰서
7	갈월동 쌍굴다리 도로	용산 "
8	대평로타리에서 중암동 삼거리 차도	성북 "
9	용담동 어귀(시의버스 터미널)로타리에서 군자 교서단까지의 차도	청량리 "
10	아현로타리(고가도로, 지하도 포함)에서 연남동 삼거리 차도	마포 "
11	사천고가도로	"
12	대림로타리에서 구로교까지의 차도	노량진 "
13	신길동 오비맥주(주) 앞에서 대림파출소앞의 차도	"
14	제판삼거리에서 삼육재활원까지의 차도	"
15	미아삼거리 북측 횡단보도에서 수유리방면 차도	북부 "
16	삼양동입구 로타리	종암 "
17	오봉로타리-정회여상까지의 소로	구로 "

(별표 2) 하 천 의 관 할 한 계		
순 위	구 간	관 할 서
1	한강수면과 한강에 건설된 교량	한수 이북지역 관할 경찰서
2	여의도 샛강	영등포경찰서
3	안양천과 안양천에 가설된 교량 (경찰서 경계에 위치한 것에 한함)	"
4	도림천과 도림천에 가설된 교량 (경찰서경계에 위치한 것에 한하며, 신도림역 승강장은 제외)	동·북측 관할 경찰서
5	홍제천 (홍은로타리 - 사천교) 과 홍제천에 가설된 교량	서 부 경 찰 서
6	중 량 천 (단, 태릉서관할 경계지역까지)	동 부 경 찰 서 태릉 경 찰 서
7	탄전과 난전에 가설된 교량	강 동 경 찰 서

(별표 3) 교 량 의 관 할 한 계		
순 위	구 간	관 할 서
1	광 회 육 교	중 부 경 찰 서
2	성 동 교	성 동 "
3	월 농 교	태릉 "
4	중 량 교	"
5	석 곡 교	북 부 "
6	수 색 교	서 부 "
7	양 화 교	영등포 "

(별표 4) 터 널 의 관 할 한 계		
순 위	구 간	관 할 서
1	사직터널	종로 경 찰 서
2	남산 제 1 호터널	중 부 "
3	" 제 2 호터널	"
4	삼청 터널	종 아 "

순 위	구	간	관 할 시
5	북악터널		성 북경찰서
6	남산 3호터널		남대문 "
7	구기 터널		서대문 "
(별표 5) <u>철 도 의 관 할 한 계</u>			
순 위	구	간	관 할 서
1	가좌동 사천교	수색 구내 경기도 도제에 이르는 철도 및 정유장	서 부 경 찰 서
2	도림철교		영 등 모 경 찰 서
3	한강에 설치된 철교		한 수 이 북 지 역 관 할 경 찰 서
4	연희 3 동 354-6호앞	철도에서 사천철교전까지의 철도	마 포 경 찰 서
(별표 6) <u>지 하 상 가 (지 하 도 포 함) 의 관 할 한 계</u>			
순 위	구	간	관 할 서
1	청계 6 가 지하상가		중 부 경 찰 서
2	회현 지하상가		남 대 문 경 찰 서
3	명동 지하상가		"
4	홍인 지하상가		중 부 경 찰 서
(별표 7) <u>기 타 특 수 지 역 의 관 할 한 계</u>			
순 위	구	간	관 할 서
1	타워 호텔		중 부 경 찰 서
2	삭도 (케이블 캐 회사)		남 대 문 "
3	선유 수원지 (한강 중지도)		마 포 "
4	경문 고등학교		노 량 진 "
5	기아자동차학원 및 광동세차장		구 로 "
6	정희여자상업고등학교		"
7	신도림역과 신도림역 승강장		"

서울특별시 경찰국 정보 1과·정보 2과 및 외사과 사무분장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훈령제 626호

서울특별시경찰국정보 1과,
정보 2과 및 외사과
사무분장규정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경찰국 정보 1과, 정보 2과 및 외사과 사무분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경찰국 정보과, 대공과
및 외사과 사무분장규정
(내 용 생 략)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6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311호(84.5.25)로 시설결정된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관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2. 1.

서울특별시장

○ 주차장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	비 고
신 설	주 차 장	성동구나장동 523 일대	21,700	청 제 천 복 개 지
"	"	" " 765 일대	16,500	청 제 천
"	"	성북구돈암동 865 일대	15,600	정 능 천
"	"	서대문구홍은동 334 일대	16,500	홍 제 천
"	"	동대문구계기동 892 일대	16,500	성 북 천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 제 6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 호 (85.1.9) 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된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사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2. 2.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너 비	길 이	시 점	중 점	비 고
신 설	소 로	2	8 m	20 m	봉천동 180-554	봉천동 180-462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기재생략)

◎서울특별시고시 제 65 호

급수공사정액공사비
및 실시지역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 8 조내지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정액공사비와 정액급수공사 실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2. 4.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실시일시 : 1985년 2월 11일 승인분부터 시행
2. 실시지역 : 서울특별시 급수가능 지역전역 (단, 제 5 호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
3. 대상 : 급수를 신청하는 건축물

4. 정액공사비 내용

구 분	정 액 공 사 비	
	포장도로굴착복구지역	비포장도로지역
연건축면적 165제곱미터미만	290,000 원	227,200 원
연건축면적 165제곱미터이상	1제곱미터당 1,800 원	1제곱미터당 1,400 원

가. 실제 공사비가 정액공사비의 150 퍼센트이상 초과될시에는 당 시 급수조례 제 8 조규정에 의하여 초과 소요비용을 정액공사비에 가산 정수함

나. 시설분담금은 별도로 가산됨

5. 특정지역

가. 급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를 수요가에서 특별히 부담하여야 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종로구 병창단지 및 주변표고 125 미터이상 지역
- 구로구 시흥동 3번지 법원단지일대
- 도면은 관할구청 수도공사과에 비치

6. 공사비 납부방법

가. 공사비는 급수신청후 납입고지서에 의거 공사 시행전에 납부하여야 함

◎서울특별시고시제 66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89 호 (84. 11. 26) 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 91 호 (84. 11. 27) 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2. 4.

시 율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학 교 (문일승· 고등학교)	구로구시흥동 산 50-8 일대	39,681	(감) 5,292	34,389	부지조정 및 일부해제
"	학 교	구로구오류동 108-28 일대	11,402	(감) 360	11,042	일부해제

나.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67호

'85 가축검진사업 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사육하는 젖소
에 대한 검진사업을 실시하고자 동
법시행규칙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5. 1. 31.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목적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
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
이고 위생적인 육류공급으로
가축이나 사람에 대한 전염
병의 퍼지는 것을 방지함
2. 지역 : 서울특별시 가축사육지역
3. 대상가축명과 질병의 종류
젖소 : 소결핵, 부루세라 (MRT),
부루세라 (PLATE)
4. 실시기간 : 85.4.1 ~ 11.30
5. 실시방법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
구소 (축산불검사부) 가축방
역관과 공 및 개업수의사에
게 위촉 실시
6. 기타사항
가. 소결핵 : 관내 전젖소에 실시하고

양성 및 의양성 발생시 농
림예규 제 110 호에 의거 조치
나. 부루세라병 : 미 경산소에 우선하
고 의심나는 젖소에 실시

◎서울특별시고시제 68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지적승인 및 (학교)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
계획시설중 전설부고시 제 23 호
(85.1.18) 로 도시계획결정된 시
설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 제 2 항, 같은법 시
행령 제 6 조 제 1 항 및 제 9 조 4
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지적승인
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5 호
(77.4.14) 의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변경 결정 고시한다.
2. 지적승인 및 변경 결정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해당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동사무소
에 두고서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5. 2. 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공원 · 녹지)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용마자연공원	성동구중곡동 산 3-18 일대	5,977,306	5,070,714	감 6,592 ㎡
"	원서근린공원	종로구원서동 206-4 및 운니동 98-7 일대	8,950	10,004.6	증 1,054.6
결 정	태 능 녹지	도봉구공능동 98-12 일대	-	10,526	신 설
"	남태령녹지	관악구남현동 64-4 일대	-	1,580	"

나.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대원중고교	성동구중곡동 산 3-18 일대	23,735	24,686	증 950 ㎡

다. 관계도면 : 따로붙임 (생략)

참 부 : 관련도면 각 1 부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69 호

도시계획사업 (시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 변경 허가 (제 2 차)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73 호 (83.9.9) 로 도시계획사업 (시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 허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712 호 (84.12.1) 로 도시계획사업 시행 변경 허가 (제 1 차) 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83-1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 변경 허가 (제 2 차)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2. 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83-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서울 망우시외버스정류장 (터미널) 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부지면적 - 36,364 m^2 연건축면적 - 당초 - 17,260.29 m^2 변경 - 19,245.52 m^2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변경 사항 없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 일 : 변경사항 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사항 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사항 없음.

공사설계도서 : 별첨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70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 터널구간)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744 호 (84. 12.11) 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 : 터널)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종합건설본부 및 종로구청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2. 5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 유치 : 종로구 청운동 6 - 종로구 부암동 26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 터널구간)
“ 청운동 - 세검정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 터널 - 폭 9.3 m (2열), 연장 47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86.12.31 까지
6.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총괄)

소재지	자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주소 성명	심 도	비 고
				관계인 주소 성명		
부암동	부암동 261-9	대	114 m^2	부암동 261-3 민 병 익	10.8 m	지하보상
"	" 262	"	396	" 262 강 정 일	15	지상보상
"	" 265-3	"	40	성북구성북동15-140 이기영외 2인	5.0	"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주 주소성명		심 도	비 고
				관계인 주소성명			
부암동	부암동 265-4	대	134㎡	부암동 265-4	김원철	8.4m	지상보상
"	" 265-5	"	36	" 265-5	김성희	5.7	"
"	" 266-1	"	2	성북구도산동257	임장순	10.9	"
"	" 332-1	"	172	부암동 267	김종수	18.5	"
"	" -2	"	99	도봉구수유동130-24	윤영봉	21	지하보상
"	" -3	"	175	부암동 332-3	송경자	11.9	지상보상
"	" -4	"	20	" 267	김충수	14.2	"
"	" -5	"	122	" 267	김규경	12.2	"
"	" -7	"	165	도봉구수유동130-24	윤영봉	21	지하보상
"	" -8	"	251	부암동 332-8	이시항	24.5	"
"	" -9	"	195	" 332-9	문병국	44.3	"
"	" -10	"	154	청운동산 4-7,32-10	이우종	50	"
"	" -11	"	182	중구쌍림동151-82	황영홍	48	"
"	" -12	"	172	도봉구수유동516-85	정영자	42	"
"	" -14	"	412	청파동3가118-93	최지우	39.9	"
"	" -15	"	158	도봉구하계동350	유종근	31.8	"
"	" -16	"	60	"	"	21.4	"
"	" -17	"	62	부암동 332-17	이종승	49	"
"	" -19	"	116	" -19	박영관	49.9	"
"	" -20	"	118	홍지동 20-8	박순자	45	"
"	" -23	"	3	부암동 267	김충수	11.5	지상보상
"	" -24	"	155	" 332-24	이일봉	49	지하보상
"	" -25	"	57	동대문구이문동138-19	박영건	49.5	"
"	" 333-12	"	145	부암동 332-12	삼애교회	51.8	"
"	" -14	"	18	" 333-13	강문웅	41.8	"
청운동	청운동 4-20	"	430.2	안양시안양동695-174	유봉식	18.3	"
"	" 4-22	"	84.8	청운동 4-22	구본상	18.8	"
"	" 4-25	"	216.7	중학동 18-6	서태균	18.4	"
"	" 4-37	"	297	관악구봉천동607-3	유봉식	20.7	"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주소성명	심 도	비 고
				관계인주소성명		
청운동	청운동 4-38	대	14.66㎡	관악구봉천동607-3 유봉식	8 m	지하보상
"	-39	"	287.33	국 유 지	32.2	"
"	청운동 6번지	"	330.35	삼청동 5번지 말일성 도교회	1	지상보상
"	청운동 7-1	"	584.53	국 유 지	35.6	지하보상
"	" 7-2	"	11.93	삼청동 5번지 말일성 도교회	2.6	"
"	청운동 7-6	"	121.32	국 유 지	35.8	"
계			부암동 28필지 3,733㎡ 청운동 10필지 2,398.82㎡			

건 물 조 서

(손실보상분)

연 번	소 재 지	구 조	종 류 면 적 (㎡)	소유자주소성명	비 고 (전화)
				관계인주소성명	
1	종로구부암동252번지	목조와즙 (주택)	1층: 69.42	종로구부암동262번지 강정일	725-4222
2	" 265-4	연와조스 라브 (주택)	1층: 73.95 2층: 45.16 지하: 12.83	종로구부암동332-24 신명철	723-7163
3	" 265-5	"	1층: 65.37 2층: 61.37	" 265-5 김성희	723-2558
4	" 332-3	세멘벽돌와 즙(주택)	1층: 23.21 지하: 74.84	" 332-3 김일우	723-4873
5	" 332-5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주택)	1층: 14.68	" 267 김충수	725-2938
6	" 청운동6번지	목조와즙 목조도단즙	1층: 76.03 1층: 856.2 지하: 99.17	" 청운동6번지 말일성 도교회	
소 계			1,472.23㎡ 부암동측: 440.83(5동) 청운동측: 1,031.4㎡(1동)		

서울특별시고시제 7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3 조의 5
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1985. 2 . 6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 : 신서울건설(주)

조 인 구

3.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쌍문

동 산 391-1

나. 면 적 : 70.78 ㎡

다. 규 모 : 연립 3층, 5동,
96 가구

4. 사업시행기간 :

'84.10-'85.10

5. 도시계획 (도로) 변경 결정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3	1	6	110	쌍문동524-73	쌍문동486-86	폐지
변경	소로	3	2	6	120	" 485-8	" 486-13	신설

서울특별시고시제 7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2 . 6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한국과학기술원 직원 주

택조합 조합장 윤정환

육군사관학교 기강요원

주택조합 조합장 오병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

산 208번지 12호외 17필지

나. 면 적 : 26,881 ㎡

다. 규 모 : 아파트 9층 9동, 432세

대 상가 2층 1동 및 부

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1984.11 ~ 1985.10.31

5.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1	6	131	공릉동 254-1	공릉동 230-8	폐 지
기정	소로	3	2	6	92	공릉동 254-1	대로2류 26호	폐 지
기정	소로	3	3	6	111	공릉동 253-9	공릉동 254-1	일 부 폐 지
변경	소로	3	3	6	111	공릉동 253-9	공릉동 254-4	변경 (일부)

서울특별시고시제 73 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정정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06 호(84. 12.27)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권한 위임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을 정정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2 . 6

서울특별시 장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정정고시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당 초	변 경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강동구 장지동 93-1 일대	3,763㎡	3,776㎡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7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정정)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50 호(83. 10.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된 양화교-행주대교간 지방도로에 대하여 인가된 면적의 일부가 정정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제 26 조,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한강개발부 및 강서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2 . 6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지 : 강서구 염창동 112 일대 (양화교-행주대교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종합건설본부장)
4. 착공 및 준공예정일 : '83.10-'85.10
5.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
6. 공사설계도 : 생략
7. 사업규모 : 폭 29m, 연장 7,400m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정 정 분)							
담 초			정 정			주 소	성 명
지 번	지 목	면적(㎡)	지 번	지 목	면적(㎡)		
강석구 방화동 11-1	임	77	강석구 방화동 11-6	임	78	서대문구송월동 69	권증필
방화동 11-4	·	282	방화동 11-5	·	259	·	·
마곡동 97-4	도	81	마곡동 97-4	도	98	·	·
개화동 290-9	잡	1	개화동 290-9	잡	3	관악구동작동 307 반포아파트 35 동 406호	최춘자

○서울특별시고시제 75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공고 제 29 호 (85.1.17) 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이를 동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증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2.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시행지 : 중구 신당동 292 의
92 일대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도로)
명칭 : 신당 1 동 292 의 92 ~
299 의 1 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규모 : 폭 6 m 연장 40 m

라.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중구
청장)

마. 사업의착수 : 1985 년 2 월 인가일
로부터

준공예정일 : 1985 년 6 월 30 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이외의 권
리의 명세 : 별항

○ 토지조서					
소재지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주소	성명
신당동 298-73	대	66	㎡	중구신당동 309-35	김순점
" 298-56	"	13	"	" " 292-163	김문천
" 298-57	"	10	"	성동구상왕십리동 28-5	표재상
" 298-58	"	20	"	중구신당동 298-58	이용학
" 298-71	"	50	"	" " 311-1	김윤기
" 298-46	"	73	"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168-329	추형원
" 292-88	"	17	"	국 (재무부)	
" 292-92	"	53	"	국	
○ 지장물조서					
소재지	종목	지장예정수량	단위	소유자	
				주소	성명
신당동 298-56	부력조 (주택)	13	㎡	중구신당동 292-163	김문천
" 298-58	"	10	"	" " 298-58	이용학
" 298-71	"	38	"	" " 311-1	김윤기
" 298-5	"	10	"	성동구구의동 239-127	김영수
" 298-116	"	8	"	성동구홍익동 294	김옥만
*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76 호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부천시 도시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2.7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운하, 도로) 실효고시					
1. 도시계획시설(운하,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가. 실효고시조서

1) 운 하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 도	비 고
실효	운·하 (경인운하)	부천시오정동 - 강서구가양동	폭 50 m 연장 6,300 m	

2) 도 로

구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실효	중 로	1	118	20	5,600	강서구등촌동	부천시원종동	
"	"	1	119	20	5,600	"	"	

나. 실효고시도면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77 호

관악산자연공원조성계획일부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419 호 (83.12.2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698 호 (83.12.16)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같은 고시 제 238 호 (84.4.28) 일부분변경 및 지적승인된 관악산 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재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공원법 제 4 조와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와

관할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2.7.

서울 특별시 장

가. 관악산 자연공원조성계획 변경조서 (별첨)

나. 관계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78 호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 (학교,
도로) 지적승인및변경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1 호 (84.1.10) 동고시 제 48 호 (84.1.24), 동고시 제

421호(84.7.24), 동고시 제 425 (84.7.25), 동고시 제 461호(84.8. 8) 및 건설부고시 제 163호(84.5. 16), 동고시 제 14호(85.1.15)에 의해 결정 및 변경결정고시된 도 시계획(용도지역)시설(학교, 도로) 들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동법시행 령 제 6조 1항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2.7 서울특별시장
--	--

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지적승인조서

지 역 별	위 치	규 모 (㎡)	비 고
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외발산동 323-3 일대	102,000	
생산녹지지역 → 주거지역	"	55,300	
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신월동산 154-1 일대	173,000	

나.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지적승인및지적승인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학 교	강서구록동산 74-3 일대			13,122	
변 경	"	" 신정동 733 일대	22,582	증) 2,060	24,642	일부추가
"	"	" 신월동 37-1 일대	12,180	감) 12,180	0	폐 지
신 설	"	" 신월동 18-2 일대			10,680	
신 설	"	" 화곡동산 144-4 일대			12,000	

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지적승인및지적승인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넓 이	길 이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 로	3	6	140	신정동 201-1	신정동 176-28	폐 지
신 설	"	"	"	"	"	"	위치변경
"	"	"	"	85	신월동산 32-1	신월동산 38-1	
"	"	"	4	95	염창동 251-6	염창동 181-22	목원조성
"	"	"	"	144	염창동 181-11	염창동 182	"

○서울특별시고시제 79 호

신문로구역 제 2 지구 재개발사업
제 3 개발자지정 고시

1. 건설부고시 제 71 호 (80.3.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57 호 (84.9.21) 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 (변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287 호 (82.7.27) 로 인가신청기간 지정 (82.7.27-83.6.30) 된 신문로 구역 제 2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 3 개발자를 지정하고 고시한다.

1985.2.7

서울특별시장

가. 제 3 개발자 지정내용

- 1) 사업명칭 : 신문로구역 제 2 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 중구 태평로 1가 64-2, -3, -4, -7, -8, -9, -12, -14, 62-13, 66, 67-1, -5, -6, 68, 69, 70, 71, 72-1, 158-1, 종로구 세종로 211-1, 213-2, 종로구 신문로 1가 150, 151 (제 23 필지)
- 3) 시행면적 : 1,980.9 ㎡
- 4) 제 3 개발자 :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윤지재단 이사장 김봉록

5) 시행자의 사무소소재지 : 중구 태평로 1가 64-7

6) 시행인가 신청기간 : 지정일로부터 6개월

○서울특별시고시제 80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공고 제 1 호 (85.1.4) 로 신문공고한 도봉구창동 581-28 번지 도시계획사업 (시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및 건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2.7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창동 581-28 번지

나. 사업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신창시장 신축공사

다. 사업규모및 면적 : 지하 1층, 지상 4층

1) 대지면적 : 3,347.80 ㎡

2) 건축면적 : 1,581.40 m^2 3) 연 면 적 : 7,986.235 m^2 라. 사업시행자 주소 도봉구 창동 581-28 신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홍 원 마. 사업시행기간 : '85. 2. 15 ~ '86. 6. 30. ◎서울특별시고시제 81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일부정정)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04 호 ('84. 10.16) 로 고시한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일부정정)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 토 지 조 서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2.8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위치 : 중구신당 4 동 340 의 24-343 의 2 간 도로개설의 1 건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와 명칭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인가 (변경없음) 다. 사업규모: 폭 6 m 연장 45 m (변경없음) 폭 6 m 연장 32 m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 장) (변경없음) 마.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985.6.30 (당초: '84.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항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설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와 건물조서 1) 중구신당 4 동 340 의 24-343 의 2 간 도로
---	--

동 명	지 적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신당 4 동	343-2	대	40 m^2	중구신당동 346-404	이 종 민	지적 342-2 에서 343-2 로 변경 (정정)
"	343-1	대	25 m^2	국 유 지		변 경 없 음
"	346-404	대	80 m^2	동대문구용두동 234-53	신 현 숙	"
"	340-24	대	108 m^2	중구신당동 340-24	업숙자의 3 인	"
"	340-137	대	3 m^2	중구신당동 340-137	최 봉 용	"

- 건물조서
중전과 같음 (변경없음)
- 2) 중구선당 4동 347의375-347의374 간도로
 - 토지조서 중전과 같음 (변경없음)
 - 건물조서

◎서울특별시고시제 82 호

하천토지점용허가 고시

당시 한강구역내에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에 의하여 골재야적을 위한 하천토지 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 25 조제 4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2.7

서 울 특 별 시 장

- 하천토지 점용허가 내용

공구	점용수허가자	점 용 위 치	점 용 면 적	점 용 내 역
1	동아건설산업(주) 임 원 수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 73-2 번지 일원	150,000 ㎡	골재야적장

- 점용허가 기간 : 1985 년 2 월 일 - 1985 년 10 월 31 일
- * 허가기간은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고시제 83 호

신문로구역제 1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

발사업 시행 인가하고 고시한다.

1985.2.8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1 호('84. 9.21) 및 동고시 제 679 호('84.11.21)로 재개발사업 계획 결정되고 동고시 제 570 호('84.9.21)로 제 3 개발자 지정된 신문로구역 제 1 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 3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거 재개

- 가. 사업의 명칭 : 신문로구역 제 1 지구 재개발사업
- 나. 시행구역 : 종로구세종로 211-1 외 21 필지
- 다. 시행면적 : 3,061.1 ㎡ (공공용지 500.2 ㎡)
-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종로구세종로 211-1

마. 건축계획 (구체적인 건축규모 및
충별용도는 건축허가로 확정)

- 대지면적 : 2,560.9 m^2
- 건 폐 율 : 35.15 %
(건축면적 : 902 m^2)
- 용 적 율 : 695.76 %
(연 면 적 : 25,924 m^2)
- 층 수 : 지하 4 층, 지상 20 층
- 주 용 도 : 업무시설 (지하 1 층
판매시설)

바. 시행기간 : '85.2.8 ~ '87.12.31

사.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중토구 세종로 211-1

동아홍행(주) 대표이사 최상균

아. 수용하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서울특별시고시제 84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과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권
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2.8

서울특별시장

○ 시설 조 서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시 점	중 점	비 고
기 정	소로	3	6	210	마포동 298-1	마포동 410-2	
변 경	"	"	4-6	185	"	" 396-2	일부구간폭원 (6 m → 4-6 m) 및 위치변경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1) 토 지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의 의권리명세
				원지적	시행구역 내 면적	시행구역외면적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종로구세종로	211-1	대지	965.6	952.4	13.2(2지구)	종로구세종로 211번지	동아흥행(주)	
2	" 신문로1가	150	"	743.8	689.4	54.4(2 ")	"	"	
3	" 세종로	213-2	"	105.8	75.6	30.2(2 ")	" 수송동 48 중구소공동 78번지	김 부 순 한 일 은 행	근저당권
4	" "	212-2	"	6.3	6.3		종로구수송동 48 중구소공동 78번지	김 부 순 한 일 은 행	"
5	중구태평로 1가	64-2	"	20.8	3.0	17.8(2지구)	종로구수송동 48번지 중구소공동 78번지	김 부 순 한 일 은 행	"
6	종로구신문로1가	151	"	223	145.4	77.6(2 ")	신문로 1가 152-2	임 인 형	
7	"	152-2	"	45.5	45.5		"	"	
8	"	153-4	도로	26.4	26.4		종로구세종로 211번지	동아흥행(주)	
9	"	153-7	대지	89.3	89.3		" 홍지동 127-21 중구남대문로 1가 14번지	구 본 중 조 흥 은 행	"
10	"	153-8	"	115.7	115.7		용산구청과동 1가 89-4 중구수표동 27-1	윤부명 (115.7㎡중 115.7 분지 104.13소유) 태흥건설(주)(115.7㎡중 115.7분지 11.57소유)	
11	"	153-9	"	22.4	22.4		시대문구홍은동 277-120	정 덕 영	
12	"	153-10	도로	11.1	11.1		종로 2가 91	상원산업(주)	

제 1059 호

시

H

1985.1.28 03:27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
				원지적	시행구역 내면적	시행구역외면적	관계인 주소 성명		
13	종로구신문로1가	153-11	대지	52.9	52.9		노 일 협		
14	"	153-12	"	12.4	12.4		종로구평창동 296-25		"
15	"	154-1	"	221.8	221.8		성북구종암동 9-104	진 기 석	소유권이전
							강남구도곡동산 18-1	문 재 철	창구권가등기
							주공아파트 302동 508호		
							종로구연지동 136-74	대한보증보험	가압류
							중구봉래동 1가 88	김 기 원	"
							중구남대문로 2가 10-1	서울신탁은행	근저당권
							강남구도곡동산 18-1	문 재 철	"
							주공아파트 302동 508호		
							중구서소문동 26	경서기업(주)	"
16	종로구신문로1가	154-2	대지	3.3	3.3		신문로 1가 154번지	홍 배 현	
17	"	155-1	"	86	86		종로구수하동 39-2	박 태 규	
18	"	155-2	"	2.0	2.0		서대문구홍은동 277-120	정 덕 영	
19	중구태평로	63-3	"	332.6	332.6		종로구청운동 55-3	김 순 안	소유권이전
							용산구이태원동 135-51	강 계 중	창구가등기
20	"	63-12	"	3	3		종로구청운동 55-3	김 순 안	근저당권
							중구남대문로 2가 111-1	한국상업은행	
21	"	63-15	"	163	163		종로구청운동 55-3	김 순 안	지상권
							중구남대문로 2가 111-1	한국상업은행	
22	"	65-4	"	1.6	1.6		종로구동숭동 199-16	왕 종 순	
합 계				3,254.3	3,061.1	193.2			

55-28

제 1059 호

시

제

1985.1.28

2) 전 물										
순번	소재지	지번	건 물					소유자 주소 설명 관계인 주소 설명	소유권 의관명세	비고
			용도	구 조	층별	면적(m ²)	연면적(m ²)			
1	종로구세종로	211-1	극 장	철근콘크리트 조외층 3층	1 2 3 지하실	1,242.93 809.92 373.56 152.07		종로구세종로 211 동 아 흥 행 (주)		
	종로구신문로 1가	150					2,578.52			
2	종로구세종로	213-2	건 물	목조외층 2층	1 2 지하실	152.07 115.7 9.92	277.69	종로구수송동 48 김 부 순 근저당권 중구소공동 76 한일은행		2지구 포 함
3	중구대평로 1가	64-2	건 물	목조외층 2층	1 2	29.75 16.53	46.28	종로구수송동 48 김 부 순		2지구 포 함
4	종로구신문로 1가	151	건 물	목조외층	1	119	119	신문로 1가 171-9 임 인 형		"
5	"	152-2	영업소	목조외층 2층	1 2	79.34 68.79	148.13	" "		
6	"	153-7	영업소 및주택	철근콘크리트 평육개및새맨 비둘코스프레 트층 4층	1 2 3 4	10.42 60.42 72.73 51.57	263.14	종로구홍지동 127-21 구 본 중 근저당권 중구남대문로 1가 14 조흥은행		
7	"	153-8	주 택	단외조외층	1 지하실	69.42 6.61	76.03	용산구청파동 1가 89-4 윤 무 병		
8	"	153-9	"	목조합석층	1	22.48	22.48	시대문구홍은동 277-120 정 덕 영		
9	"	153-11	"	목조외층	1	39.67	39.67	신문로 1가 153-12 노 일 형		
10	"	153-12	"	"	1	12.3	12.3	" "		

순번	소재지	지번	건			물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의 의사	비고
			용도	구 조	층 별	면적(㎡)	연면적(㎡)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1	종로구신문로 1가	154-1	영업소	세멘트연외조 와즙 2층	1 2	74.55 74.55	149.10	설북구중암동 9-104 강남구도곡동 18-1 주공아파트 302 동 508 종로구연지동 136-74 중구봉래동 1가 88 중구남대문로 2가 10-1 강남구도곡동 18-1 주공아파트 302 동 502 중구서소문동 26	진 기 식 문 재 철 대 한 보 증 보 협 김 기 원 서 울 신 택 은 행 문 재 철 경 서 기 업 (주)	소유권이 전가등기 가압류 "	

◎서울특별시고시제 85 호

은평구불광동 105-280 간

도로개설공사 추가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2493 호 (66.2.21) 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건설부고시 제 2948 호 (66.12.7) 로 지적 승인되어 서울시 고시 제 431호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은평구불광동 105-280 간 도로개설공사에 누락된 토지,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과 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가시행 인가코자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2. 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은평구불광동 105-280 간 (연신국교-불광국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은평구불광동 105-280 간 (연신국교-불광국교)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B = 12m$, $L = 1,510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은평구청장)

마. 사업기간: '84.7.25-'85.10.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아. 보상계획

1) 대상건물: 별첨토지

2) 보상의 시기: 보상협의 완료후

3) 보상의 절차

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약체결 요구일로부터 2개월이내 협의취득

나) 협의불응시 토지수용법 제 25 조 2 항 및 동법 제 77 조 규정에 의해 수용

자. 보상지급방법

1) 토지: 계약과 동시 보상금 전액지급

2) 건물: 계약과 동시 70%지급
철거후 잔액 지급

불광동 105-280 (연신국교-불광국교) 간도로개설공사토지조서 (누락분)

소재지	분할전토지			분할후(수용대상)토지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은평구	172-19	대	217㎡	172-28	대	2	진관외동 424-28	박찬동
불광동	172-8	전	99	172-29	전	5	불광동 107	공점필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누락분)

지번	지목	면적 (㎡)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종류및내용	
은평불광 172-19	대	217				
172-8	전	99				

토지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규정에 의한관계인 (누락분)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은평구불광동 172-28	대	2	은평구진관외동 424-28	박찬동	
172-29	전	5	불광동 107	공점필	

불광동 105-280 (연신국교-불광국교) 간도로개설공사건물조서 (무허가) (누락분)

소재지	건물의 종류	구조및 규격	건축면적(㎡)				저축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
			지하	1층	2층	계			
은평구 불광172-19	집포 주택	연와조 평옥개	27.77	106.45	102.48	236.70	20	진관외동 424-28 박찬동	

건물의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규정에 의한관계인주소성명 (누락분)

소재지	지번	허가별	공부상면적	소유자주소성명	이해관계인
은평구불광동	172-19	유	236.70	은평구진관외동 424-28 박찬동	

사용또는수용할건물의소재지, 허가별, 수용면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누락분)

소재지	지번	허가별	수용면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은평구불광동	172-19	유	20㎡	

○서울특별시고시제 86호

도시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고시

- 도시재개발사업 신문로 2구역 제 6지구, 10지구, 11지구, 마포로 1구역 50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8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

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2.8

서울특별시장

지구명	구분	대지면적	전체율	용적율	층수	주용도	비고
신문로2구역	당초	2,678.1㎡	38%	665%	19/4	업무시설	
6지구	변경	2,678.1	35-38%	550-570%	16/3	업무시설	
신문로2구역	당초	2,873	-	-	-	-	
10지구	변경	2,915.5	-	-	-	-	지구체조정
신문로2구역	당초	4,127.3	40%	390%	10/5	업무시설	
11지구	변경	4,084.8	42-45%	320-340%	10/7	업무시설	지구체조정
마포로1구역	당초	2,312.2	50%이하	570%이하	16층이하	업무시설	
50지구	변경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부속용도: 판매시설, 근린생활, 위락시설

나. 관계도면: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87호

서울대공원공원시설(운동시설)설치허가

- 서울특별시 고시 제9호(85.1.10)로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15호(85.1.11)로 공람공고된 서울대공원 운동시설지구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를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5.2.9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경기도 시흥군 과천
면 막제리 363 일대

나. 면 적 : 36,300 ㎡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
업 (공원조성)

서울대공원 운동시설 조성공사

라. 사업시행 내역 : 별첨

마. 사업시행자 : (주)한양건축 대표이사
현 증 락

바.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착공일 : '85.2 준공일 : '86.12

사. 사용할 토지명세 (생략)

아. 토지소유자 : 서울특별시

자. 위치도 및 평면도 : 별첨 (도면생
략)

운동시설사업시행내역

- 조정시설 - 녹지대조성, 가족단위휴
게소, 파고라, 음수대,
시계탑, 안내판등
- 운동시설 - 테니스장 9면, 실외플장
2개소, 하이스라드 1개소

- 유희시설 - 어린이종합놀이시설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1동, 보일러
및 정수기제실 2동
- 편익시설 - 간이매점 4동, 서어비스
(샤워) 등 2동, 화장
실 3동 매표소 1동
- 기 타 - 공작물 138 기 (비치파라
솔, 광고판, 가로등, 스
벤드, 공중전화등)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81 호

K S 표시정지 처분해제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따
라 K S 표시정지처분 한바 있는 다
음사항에 대하여 동처분을 해제하였
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5.2.5

서울특별시장

업 체 명	롯데알미늄(주)	국제다이아몬드공업(주)	삼창주철공업(주)
대 표 자	전 재 덕	김 정 환	이 규 홍
소재 지	서울구로구독산동 1005	서울구로구신도림동 291-187	서울구로구구로동 642-2
규격번호	KSD 6705	KSE 3107	KSB 1531
품 목 명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	다이아몬드 코어비트	나사식기단주철제 관 이음쇠

종류등급	1 등 (타래상)	서페이스셋트	엘보우
처분일자	'84.11.5	좌 동	좌 동
해제일자	'85. 2.5	"	"

◎서울특별시공고제 82 호

KS 표시절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1조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
를 공고한다.

1985.2.4

서울특별시

업 제 명 : 동부제강(주)

대 표 자 : 안 병 화

소재지 : 서울구로구오류동 123

규격번호 : KSD 3563

규 격 명 :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
소강판

종류등급 : 2 등

처 분 기 간 : 1985.2.4 - 1985.5.3 (별도
해제시까지)

처분사유 : KS 규격 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 84 호

도로공사계획공고

1.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3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
거 도로공사 제퇴을 별첨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은정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열람케 한다.
3. (상수도, 전화, 전기, 도시가스등)
유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본공사 기간중에 시행토록 하시기
바란다.

도 로 공 사 계 획

노선명	공 사 명	공사시행구간	시행자	시행기간
서울특 별시도	서부배우서 - 국립보건원 간도로개설	녹번동산5-117의4	은 경 구청장	85.2-85.9.15
"	녹번동 104-136 간도로개설	녹번동 104-136	"	85.2-85.9.15
"	녹번동 20-21번지 주변 도로포장공사	녹번동 20-21	"	85.2-85.6.5

노선명	공 사 명	공 사 시 행 구 간	시행자	시행기간
서울특별시	불광동(불광국교-연신국교간) 도로개설	불광국교-연신국교	은 경 구청장	85.2-85.9.15
"	불광1동산42-산1번지 주변하수도공사	불광1동산42-산1	"	85.2-85.6.10
"	불광동281번지주변하수도공사	불광281의75-281의145	"	85.2-85.6.10
"	불광1동280번지주변하수도공사	불광1동280의294-280의58	"	85.2-85.7.15
"	불광2동170의185-171의26 포장공사	불광2동170의185-171의26	"	85.2-85.9.15
"	불광2동90-100주변하수도공사	불광2동90-100	"	85.2-85.7.30
"	불광2동105-163주변하수도공사	불광2동105의28-146의5	"	85.2-85.6.30
"	갈현동499-502간 도로정비	갈현동499-502	"	85.2-85.7.20
"	갈현동12번지주변하수도공사	갈현동12의373-12의434	"	85.2-85.6.5
"	갈현동272, 274, 275, 277하수도개량공사	갈현동272-275의85	"	85.2-85.6.5
"	갈현동398-392.3로정비공사	갈현동398-392	"	85.2-85.6.
"	구산동20의1-20의30간 도로정비공사	구산동20의1-20-30 " 23의10-23의9	"	85.2-85.6.20
"	구산동177, 179하수도개량공사	" 177-47-84	"	85.2-85.6.5
"	대조동59의14-59의67 도로개설공사	대조동59의14-59의67	"	85.2-85.9.15
"	대조동81의6-84의105대 은국교진입로도로개설	대조동81의6-84의105	"	85.2-85.9.15

노선명	공 사 명	공 사 시 행 구 간	시행자	시 행 기 간
서울특별시도	대조동 212 의 36-46의 8 도로정비	대조동 212의 36-46의 8	은 경 구청장	85.2-85.6.5
"	응암동 170, 227, 225, 120-120의 20 도로정비공사	266의 19-250 의 4	"	85.2-85.6.30
"	응암동 53-58 간도로개설공사	응암동 53 의 11-58 의 33	"	85.2-85.9.15
"	응암동 266-270 도로정비공사	응암동 266-270	"	85.2-85.6.10
"	응암동 397 의 143-348 의 6 도로개설공사	응암동 397 의 143-348의 6	"	85.2-85.9.15
"	응암동 365-376 주변 하수도공사	응암 3 동 365-376	"	85.2-85.7.10
"	역촌동 218 도로개설공사	역촌동 218의 -218 의 2	"	85.2-85.8.30
"	역촌동 62-82 주변 하수도공사	역촌동 62-82	"	85.2-85.4.30
"	신사동 268 의 9-262의 12 도로개설공사	신사동 268 의 9-262 의 12	"	85.2-85.9.10
"	신사동 237의 409-237 의 415 도로정비 공사	신사동 237 의 409-237 의 415	"	85.2-85.6.20
"	증산동 300, 388 도로포장공사	300 의 7-303 의 1 388의 36-388 의 72	"	85.2-85.6.10
"	수색동 205, 171, 1번지 주변 하수도공사	205-928-933, 171-179-51-271-288	"	85.2-85.6.30
"	진관내동 156 층점 -한양 주택간하수도공사	진관내동 413-420	"	85.2-85.6.30
"	진관내동 물푸레골입구 하수도공사	구파발동 5 의 4 - 12	"	85.2-85.6.30
"	진관외동 270, 271 번지 주변 하수도공사	진관내동 261-1-267-35 279-5-406	"	85.2-85.7.25

◎서울특별시공고제 8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를
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24 호 (85.1.14)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된
중구정동 1 의 45 에원 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요청이 있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요자
도시계획법 제 25 의 2 및 동법시
행령 제 27 조의 2 에 의거 공고일
로 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1985. 1. 28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를
위한 공람공고 조서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중구정동 1
의 45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예원학교설기지도설증축
- 3.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이화학원이
장 신 봉 조
- 4.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가. 대지면적 : 8,842.4 m^2
나. 건축면적

면적	구 분	기 준 (m^2)	증 축 (m^2)	계 (m^2)	비 고
건 축 면 적		4,027.45	889.41	4,916.86	
연 면 적		4,027.45	889.41	4,916.8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2)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 고
중구정동	1의45	학교주변	8,842.4	학교법인이화학원	없음	

6. 사업기간 : 1985.2.20-1985.8.31

7.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시정비과

8. 공람기간 : 1985.2.6 ~

1985.2.19

◎서울특별시공고제 86 호

건설업 (전문공사업) 영업정지처분

건설업법을 위반한 다음업체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 38 조 제 1 항 제 6 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전문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1985. 2. 5

서울특별시장

다 음

업종및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 유	정지기간	근거법규
보링그라우팅 (서울 82-14-37)	동양지하 개 발	이중섭	마포구합정동 374-1	영업정지기 간중에 건설 업을 영위	85.5.7- 86.5.6	건설업법제 38-1-6

◎서울특별시공고제 87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
계획 공 란 공 고

1. 서울시고시제 218 호 (78.5.15) 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천호동 386-391 간 도로포장 공사
에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
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
법 제 25 조 2 의 1 항 및 동법시
행령 제 27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
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
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가. 공람장소 : 강동구청 토목과
나. 공람기간 : '85.2.6-85.2.19
(14 일간)

1985. 2. 6

서울특별시장

공 란 개 요

1. 사업명 : 천호동 386-391 간 도로포
장공사
2. 사업시행지 : 천호동 386-11~391-

47

55-40 제1059 호

시

보

1985.1.28

3. 사업규모 : B = 8m L = 170m

콘크리트포장 11.45a

하수도 D = 600% L = 165%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로부터 1년6.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공람장소에 제출문의바람

토 지 조 서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의 의권리명세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천호동 391-50	대	84 m ²	천호동 391-28	김 영 욱	
391-52	대	7 m ²	391-32	홍 순 황	
391-53	도	37 m ²	중구장충동1가 33-8	박 두 학	
391-51	대	94 m ²	천호동 391-30	김 석 봉	
391-49	대	6 m ²	391-18	정 상 현	
391-55	도	223 m ²	서대문구홍은동 48-182	배 봉 연	
389-24	대	11 m ²	천호동 389-1	남 순 우	
388-47	도	324 m ²	375-38	신 석 호	
386-22	도	474 m ²	280-9	김 선 욱	
391-46	대	129 m ²	제주도북제주군한경면고산 리 2202	이 경 래	

지 장 물 조 서

자 번	명 칭	수 량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의 의권리명세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천호동 388-29	담장, 대문	20 m	천호동 388-29	조 명 기	
389-1	"	14 m	389-1	남 순 우	
391-41	"	4 m	391-41	한 재 근	
391-30	"	16 m	391-30	김 석 봉	
391-30	화 장 실	7 m ²	391-30	"	
391-28	담장, 대문	10 m ²	391-28	김 영 욱	

◎ 서울특별시공고제 88 호

도로개설및하수도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 호 ('69.1.18) 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토록 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가름한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에서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공 란 개 요

1. 사업의시행지 : 홍은3 동 351-24 ~ 378-1 간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도로개설및 하수도
3.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 폭 6 미터
연장 190 미터
하수관정 : 450 미터 연장 82.5 미터
600 미터 연장 117.5 미터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85.8.30 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별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7. 보상계획

가. 대상물건 : 별첨

나. 보상시기 : '85.2.-'85.5

다. 보상절차

- 토지 : 계약과 동시전액 지급
- 건물 : 계약후 70 % 철거완료 후 잔액지급

라. 관계도면 : 별첨

◎ 서울특별시공고제 89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제 281 호 ('78.6.12) 도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신수동 290-298-2번지간 도로정비공사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27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고하고자 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3.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가. 공람장소 : 마포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 '85.2.8~2.21(14일간)

1985. 2. 6

서울특별시

공 랑 개 요

1.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

계획

가. 사업장위치 : 신수동 290-298-2번지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수동 62번지의 1개소 도로정비공사
다. 사업의 규모 : B=6m L=30m 하수도 D=800mm L=33.5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85.6.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토 지 조 서

지 번	지목	지적(㎡)	편 입 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권리종목	비 고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신수동 288-11 호	대	99	10	신수동 288-11호	홍성진		편입토지지적 분할지번 288-30
신수동 289-1 호	"	142	38	신수동 289-1	최인덕		편입토지지적 분할지번 289-2
신수동 290-1 호	"	195	21	신수동 290-1호	정철원		편입토지 지적
				부산시동구초량2동285-2정재원 서울중구남대문로2가9-1(주)국민은행	가 등 기 근저 당원	분할 290-3	
신수동291	"	30	30	신수동 291	강신애		291-1호 포함편입
신수동 292	전	60	39	신수동 294 서울중구남대문로2가9-1(주)국민은행 (서강지점)	이범용	"	편입 토지분할 지 번 292-1 호 292-2 호

건 물 조 서							
소재지	용도	구 조	면적(㎡)	면입면적(㎡)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의	비 고
					관계인주소성명	의권리명세	
신수동 288-11	주택	연와조평옥개	1층 56.2 2층 31.83 지하 9.75	1층 2	신수동 288-11호 홍성진		면입건물부분 토 지분할 288-30
신수동 290-1	"	목조와즙	60.73	7	신수동 290-1 정철원		면입건물부분 토 지분할 290-3
					부산시동구초량 2동 385-2 정 제원 서울중구남대문 로 2가 9-1 (주)국민은행	가등기 근저당권	
신수동 289-1	"	연와조시멘트 와즙. 시멘트브릭조 평옥개 (물치)	65.79 4.79	22	신수동 289-1 최인덕		면입건물부분 토 지분할 289-2
신수동 291	"	세멘 벽돌조 와즙	36.4	36.4	신수동 291 강선예		무허가 (291-1 호 지상건물포함)
신수동 294-1	"	세멘브릭조	15	15	신수동 294 이범용		무허가 (면입건물부분 지번 292-1 292-2)
		스래트즙 세멘벽돌와즙	64	9			
신수동 297	"	세멘벽돌 스래트	30	3	신수동 297 조인홍		무허가

◎서울특별시공고제 90 호

도로 공사 계획 공고

1. 도로법 시행령 제 24 조의 3 항에

가. 도로공사계획조서

의거 도로공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 열람케한다.

노선명	공 사 구 간	공 사 명	시행자	공사기간	비고
서울특별시도	봉천 6 동 1685 의 32 ~ 장 미원아파트간	봉천 5 동 장미원아파트 진입로정비	관악 구청장	85.2 ~ 5.30	
"	신림 3 동 661 주변	신림 3 동 661 주변 하수도시설	"	"	
"	신림 7 동 산 104 " 산 102 의 4 (4/7 ~ 5/6)	신림 7 동 산 104 의 5 개소 하수도 및 도로포장	"	85.2 ~ 6.30	
"	" 산 104 (14 / 1) 봉천 9 동 635 의 494 ~ 503 간		"		
"	남현동 1061, 1054, 1055 주변	남현 1061 의 2 개소 도로포장	"	85.2 ~ 12.30	
"	신림 5 동 1450, 1452 주변 신림 5 동 1434 주변	신림 5 동 1450 의 5 개소 도로포장공사	"		
"	봉천 본동 907 의 27 봉천 7 동 1636 ~ 1634 간		"		
"	삼육재활원 ~ 신림극장간	신림로 가로등시설공사	"	85.2 ~ 5.30	

※ 도면생략

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
정이니, 본 구간내 지하매설물(전
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유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기간중에 시행하시기 바

랍니다.

1985 . 2 . 7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91 호

건설업 (전문공사업) 영업정지처분

건설업법을 위반한 다음업체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 37 조제 2 항제 4 호 규정에 의

하여 건설업 (전문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을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37 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1985 . 2 . 8
서울특별시장

다

음

업종및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 유	정지기간	근거법규
토공 (서울 82-02-275)	성 광전업(사)	이 광부 최준식	강남구청 담동 222 -6	무면허업자 에게 재 하도급주어 시공	85.2.11 ~ 86.2.10	건설업법 제 37-2-4

◎서울특별시공고제 92 호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관 계 공 무 원 직 인 동 료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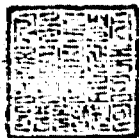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11600 호, 1984.12.
31) 에 의한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을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
원 직인 규칙 제 7 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조등록하고 관인 규
정 제 9 조에 의거 이에 공고한다.

1985.1.28
서울특별시장

1. 직 인 명 : 별첨
2. 직인의인명 : 별첨
3. 사용개시일 : 별첨

직 인 등 록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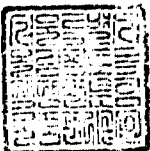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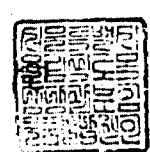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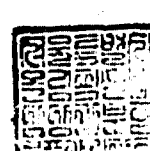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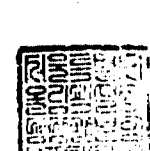


회 계 명 : 일반회계, 올림픽특별회계

관 서 명 : 올림픽건축담당관

지 명 : 서울특별시 올림픽건축담당관 본임물품출납원

사용개시일 : 85.1.28

	<u>직 인 등 록 조 서</u> 회 계 명 : 일반회계, 올림픽특별회계 관 서 명 : 올림픽건축담당관 직 명 : 서울특별시 올림픽건축담당관 분임물품관리관 사용개시일 : '85.1.28
	<u>직 인 등 록 조 서</u> 회 계 명 : 일반회계, 올림픽특별회계 관 서 명 : 올림픽토목담당관 직 명 : 서울특별시 올림픽토목담당관 분임물품관리관 사용개시일 : '85.1.28
	<u>직 인 등 록 조 서</u> 회 계 명 : 일반회계, 올림픽특별회계 관 서 명 : 올림픽토목담당관 직 명 : 서울특별시 올림픽토목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사용개시일 : '85.1.28
	<u>직 인 등 록 조 서</u> 회 계 명 : 일반회계, 올림픽특별회계 관 서 명 : 올림픽설비담당관 직 명 : 서울특별시 올림픽설비담당관 분임물품관리관 사용개시일 : '85.1.28
	<u>직 인 등 록 조 서</u> 회 계 명 : 일반회계, 올림픽특별회계 관 서 명 : 올림픽설비담당관 직 명 : 서울특별시 올림픽설비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사용개시일 : '85.1.28

◎서울특별시공고제 94 호

은평구대조동 81-1~81-105 간 도로개
설 공사 실시 계획 공람 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3 호 (69.1.18) 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된 은평구대조동 80-1~81-
105 간 외 10 필지 도로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
법 제 25 조 2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이해관계인에 개
별 통지할 예정이나 미수령자에 한
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5. 2. 8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가. 사업시행지 : 은평구대조동 81-1~81-105 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도로, 하수도)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B = 6 m L = 200 m A = 12 a

하수도 D = 600 mm L = 200 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
시계획인가즉시 (85.2-85.8 월말)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
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사.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 4 조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아. 기타사항 : 의견 및 자세한 사항은 은
평구청토목과에 제출문의하시기 바라며,공
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 일간이다.

대조동 81-1~81-105 간 도로개설공사토지조서

소재지	분할전토지			분할후(수용대상)토지			소유자주소성명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관계인주소성명	
은평구 대조동	74-232	임	368㎡	74-232	임	324㎡	대조동 72-19	박영수
	3-84	대	47	3-84	대	47	" 3-9	김홍준
	3-85	"	18	3-85	"	18	강남대지 287-1	김기철
							신해청 APT (6 동 208)	
	83-41	"	2	83-41	"	2	대조동 83-35	김정자
	84-108	"	26	84-108	"	26	" 84-92	이인석

소재지	분할전토지			분할후(수용대상토지)			소유자주소성명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관계인주소성명	
은평구	74-230	임	682㎡	74-242	임	147㎡	대조동 72-19	박영수
대조동	84-99	대	20	84-121	대	1	국제통신주식회사	
	82-2	전	312	82-2	전	312	을지로 1가 72-9	박영수
계	8필지		1,475			87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은평구대조동 74-232	임	368㎡		
" 3-84	대	47		
" 3-85	"	18		
" 83-41	"	2		
" 84-108	"	26		
" 74-230	임	682		
" 84-99	대	20		
" 82-2	전	312		
계		1,475		

토지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 규정에의한관계인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조유권이외 의권리명세
			관 제 인 주 소 성 명		
은평구대조동 74-232	임	324	은평구대조동 72-19	박영수	
" 3-84	대	47	" " 3-9	김홍준	
" 3-85	"	18	강남구대치동 287-1 (신해청㉠ 6-208)	김기철	
" 83-41	"	2	은평구대조동 83-35	김정자	
" 84-108	"	26	" " 84-92	이인석	
" 74-242	임	147	" " 72-19	박영수	
" 84-121	대	1	국제통신주식회사		
" 82-2	전	312	을지로 1가 72-9	박영수	
계		877			

건물의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규정에 의한관계인 주소성명						
소재지	지번	허가별	공부상면적	소유자 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관계인 주소성명		
은평구대조동	3-41	유허가	319.34㎡	대조동 84-36	박영자	
"	81-1	"	117.76	" 81	박동진	
"	3-50	"	86.31	종로구계동 36-2	김기철	
"	3-9	"	52.59	은평구대조동 84	박창봉	
"	83-35	"	71.51	" " 83-35	김정자	
"	84-92	"	25.12	" " 84-92	김항영	
"	84-84	"	59.24	" " 84-84	한달선	
계	5 동					
사용또는수용할건물의소재지, 허가별, 수용면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소재지	지번	허가별	수용면적	소유자 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관계인 주소성명		
은평구대조동	3-41	유허가	6㎡			
"	81-1 (81-2)	"	4			
"	3-50(74-32)	"	4			
"	3-9 (3-84)	"	5			
"	83-35(82-1)	"	12			
"	84-92(84-108)	"	5			
"	84-84(84-98)	"	11			
계	7 동		43			
서울특별시공고제 95 호				456 호 (78.9.6) 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 된 은평구 신사동 268 의 9-262 의 12 의 10 필지 도로신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신사동 268 의 9~262 의 12 간 도로 개설공사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제 3 호 (69.1.18) 및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이해관계인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미수령자에 한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5.2.7

서울특별시

공 람 개 요

- 가. 사업시행지: 은평구신사동 268의 9-262의 12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S = 6 m, L = 98 m, A = 5 a$

하수도 $D = 450 \text{ mm}$ $L = 98 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
 실시계획인가즉시(85.2-85.8 말)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아. 기타사항: 의견 및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토목과에 제출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임.

신사동 268-9 ~ 262-12 간도로 개설공사토지조서

소재지	분할전토지			분할후(수용대상)토지			소유자주소성명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관계인주소성명	
은평구 신사동	262-2	대	1,053	262-21	대	397	성북구돈암동 252-4	조진태
	262-8	"	238	262-20	"	67	은평구신사동 11-28	장석원
	262-12	"	169	262-18	"	23	" 262-12	김용근
	262-13	"	99	262-13	"	94	" 262-13	유해중
	269-8	"	119	269-13	"	9	" 269-8	채규남
	268-9	"	109	268-17	"	2	" 268-9	한원동
	262-14	"	216	262-17	"	93	성북구돈암동 252-4	조진태
	268-6	"	49	268-6	"	19	은평구신사동 262	김상인
	산 23-8	임	116	산 23-8	임	17	종로구강정동 69-9	황해규
	262-1	대	387	262-17	대	2	" 돈의동 42	장영진
계	10필지		2,555			723		

사용토는수용할토지의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은평구신사동	262-2	대	1,053		
"	262-8	"	238		
"	262-12	"	169		
"	262-13	"	99		
"	169-8	"	119		
"	268-9	"	109		
"	262-14	"	216		
"	268-6	"	49		
"	산 23-8	임	116		
"	262-1		387		
계			2,555		
토지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3 조 3 항의규정에의한관계인					
지	번	지목	지적(㎡)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은평구신사동	262-21	대	397	성북구돈암동 252-4	조진태
"	262-20	"	67	은평구신사동 11-28	장석원
"	262-18	"	23	" 262-12	김용곤
"	262-13	"	94	" 262-13	유해중
"	269-13	"	9	" 269-8	채규남
"	268-17	"	2	" 268-9	한원동
"	262-17	"	93	성북구돈암동 252-4	조진태
"	268-6	"	19	은평구신사동 262	김상인
"	산 23-8	임	17	종로구궁정동 69-9	황해규
"	262-17	대	2	종로구돈의동 42	장영길
계			723		

사용또는수용할건물의소재지, 허가별, 수용면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소재지	지번	허가별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관계인주소성명	
은평구신사동	262-2 (262-14)	유허가	29		
"	262-8	무허가	25		
계	2 동		54		
건물의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규정에의한관계인주소성명					
소재지	지번	허가별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이해관계인
				관계인주소성명	
은평구신사동	262-2 (262-14)	유허가	76.03	은평구신사동 262 이상필	
"	262-8	무허가		" 262-8 장석원	
계	2 동				
◎서울특별시공고제 96호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공고 1.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시행하여 환지처분한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청산금 납입고지서를 서울특별시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사무처리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함. 1985.2.7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가. 지구명 :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다. 납부기한 : 1985.2.28 라. 공시송달사유 : 주소또는 거소불명 마. 공시송달대상토지별 청산명세서: 서울특별시 구획정리과 및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비치 바. 기타 : 공시송달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울특별시 구획정리과에 와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기 바람.					

구 청 공 고

◎ 동대문구공고제 6 호

상설시장개설허가공고

시장법 제 6 조 및 동법 제 7 조 2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설
시장 조건부 개설 허가처분하였기
동법 제 20 조 제 2 항제 1 호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5.2.5

동 대 문 구 청 장

1. 허가일자 : 1985.2.5
2. 개 설 자 : 덕수종합개발(주)
3. 개설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7동 750-7 호
4. 대 표 자 : 정 봉 운
5. 시장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
목 7 동 750-7 호 지하 1 층, 지상 5 층
중 1, 2 층, 8, 228.22 m^2
6. 명 칭 : 동서울상가
7. 허가내용 : 일반소매시장

예 규

◎ 서울특별시에규제 468 호

서울특별시립 동부여자기술원
운영 규칙 폐지에규

서울특별시립 동부여자기술원 운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985.1.30

서 울 특 별 시 장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1986 년
1 월 16 일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에규제 469 호

서울특별시급수공사사무
취급요령증개정요령

서울특별시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
령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장제 1 항 바호 1) 을 다음과 같
이 한다.

85.2.4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존 수도전의 개량, 수선, 철거등의 공사 다만, 기존건물 면적을 제외한 증축 연면적이 165㎡이상인 건물의 급수관(양수기포함) 구경확대공사는 증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액 공사비를 산정 부과한다. 제 4 장제 5 항 나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나. 비상용~저수조 설치기준은 아	래와 같다. ○ 주택(85㎡미만): "1㎡이상"을 "1㎡이상, 단 정호 또는 지하수 개발시 권장"으로 부 처 이 요령은 1985.2.11부터 시행한다.
--	---

사 령

◎ 1985 년 2 월 4 일자

령 제 54 호

성 명	발 령 부 서	현 부 서	직 급
권영은	도 로 과	총 무 과	지방통신기사
김성재	"	"	지방통신장(기능직7등급)
조왕인	"	중 구	"
이종덕	"	총 무 과	지방통신원(기능직8등급)

◎ 1985 년 2 월 20 일자

령 제 5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정숙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동작구 근무를 명함	경상북도김천시 회계과	지방행정서기보

◎ 1985 년 2 월 7 일자

령 제 56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기홍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업 무 과	지방기계장(기능직7등급)

◎ 1985년 2월 9일자

령제 57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연배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4.11.5자 전책처분을 취소함.	치수과 수방계장	지방토목기과

서울특별시장